

# 2020년도 제4차 재경위원회 회의결과

1. 일 시 : 2020. 10. 29.(목) 14:00~16:00

2. 장 소 : 행정관 4층 소회의실(비대면 회의)

3. 참석현황 : 위원 30명 중 참석 21명, 불참 9명

참석위원(21)

- 당연직(6) : 기획부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시설관리국장
- 임명(위촉)직(15)
  - 학내위원(8) : 안○○, 박○○, 이○○, 이○○, 이○○, 이○○, 김○○, 박○○
  - 학외위원(7) : 전○○, 서○○, 김○○, 박○○, 정○○, 이○○, 최○○

불참위원(9)

- 연구처장, 정보화본부장, 발전기금상임이사, 김○○, 이○○, 이○○, 강○○, 이○○, 윤○○

배석

- 기획부처장, 교무과장, 기획과장, 회계지원팀장

## 4. 안 건

전차회의록 보고

- 2020년 제3차 재경위원회 회의록

보고 안건

- 「서울대학교 적립금 운영 및 관리 지침」 제정

심의 안건

- 서울대병원 재원의 의과대학 전임교원에 대한 재원이전 계약 갱신(안)
- 「서울대학교 교원 보수 규정」 일부개정(안)
- 2019회계연도 서울대학교 종합재무제표(안)

## 5. 회의 결과

### 가. 전차 회의록 보고

#### □ 2020년 제3차 재경위원회 회의록

- 보고자 : 김용철 예산과장
- 2020년 제3차 재경위원회(2020.9.17.) 회의록을 원안대로 접수함

### 나. 보고 안건

#### □ 「서울대학교 적립금 운영 및 관리 지침」 제정

- 보고자 : 김용철 예산과장
- 안전요지
  - 법인회계 불용액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이월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대학교 적립금 운영 및 관리 지침」을 제정하고자 함
- 제시된 의견
  - 잉여금 처분 방식으로 적립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년에 한번만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어려움. 사립대와 같이 운영계산서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적립금 제도 최초 시행단계이므로 운영한 후 사립대 방식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함

다. 심의 안건

□ **서울대병원 재원의 의과대학 전임교원에 대한 재원이전 계약 갱신(안)**

○ 보고자 : 노혁준 기획부처장

○ 안건요지

- 의과대학 특별임용 전임교원을 포함한 향후 병원 재원 전임교원의 재원 이전 방식을 현행인 법정 기부금에서 법인회계에 직접 전입하는 계약 방식으로 변경

○ 제시된 의견

-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재원을 이전하는 경우 서울대학교 정관과 병원 정관이 변경될 필요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

⇒ 정관 부칙에 따라 전환하기로 한 인원에 대한 재원 방식만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정관 개정은 현재 불필요하나, 향후 서울대 병원 정관 개정 필요 여부에 대해 검토하기로 함

-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서울대병원이 인건비를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기부금 형태가 아닌 계약 체결에 따른 재원 이전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임

- 또한, 세금 측면에서도 계약 방식이 기부금 방식에 비해 더 나은 방식으로 보임

○ 심의결과 : 원안대로 심의함

□ 「서울대학교 교원 보수 규정」 일부개정(안)

○ 보고자 : 신석민 교무처장

○ 안건요지

- 승급제한기간 가산이 적용되는 징계사유에 ‘공금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 과 ‘음주운전’ 추가하고, 승급제한 가산기간 확대(3→6개월)
-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겸직교원에게는 본교에서의 근무비율에 따른 봉급 조정 근거 신설

○ 제시된 의견

- 신설 규정(총 근무시간의 1/5 초과하는 겸직 허가를 받은 교원에 대한 봉급 조정)이 교원 창업의지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신설 규정을 통해 겸직근무 상한시간(1/5)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임

-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 제14조에 따라 총 근무시간의 1/5을 초과하는 겸직 허가가 가능하며 이 경우 겸직기간 중 본교 근무비율에 따라 본교 봉급을 조정할 수 있음. 현재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 심의가 진행 중으로, 해당 규정의 주요 내용은 교무처에서 추후 재경위원회에 별도 보고하기로 함

- 「서울대학교 교원 보수 규정」 개정안 제19조제4항, 제30조제4항에 따라 봉급 및 연봉월액을 조정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교원의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항을 「서울대학교 교원 보수 규정」 본문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교원 겸직으로 인한 근무비율 조정 및 봉급 감액에 관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하기로 함

○ 심의결과 : 원안대로 심의함

□ **2019회계연도 서울대학교 종합재무제표(안)**

○ **보고자** : 김성래 회계지원팀장

○ **안건요지**

- 유형자산은 시흥캠퍼스 토지 8,892억 원 취득으로 증가하고, 감가상각 및 국고보조금 증가로 1,117억 원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8,634억 원 증가
- 정부출연금및보조금은 정부출연금수입이 172억 원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234억 원 증가

○ **제시된 의견**

- 종합재무제표 작성 시, 적립금 설정 등을 통하여 당기운영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회계 처리방법을 연구 및 검토해주시기 바람

○ **심의결과** : 원안대로 심의함